

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

(이진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90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4.
발 의 자 : 이진분, 최진호, 한명훈
유재수, 설호영, 현옥순
최찬규, 이지화, 황은화
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-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안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6조)
- 비밀준수 의무 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보호관찰 대상자 등”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·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심리적·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
2.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·교육사업
3.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교육 지원
5.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

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건강증진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·단체·개인 및 안산시 소속직원에 대하여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1)